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결산 개요	1
1. 결산 총괄	3
가. 세입	3
나. 세출	3
II . 주요내역	5
1. 세입	7
가. 총괄	7
나. 집행내역	8
(1) 수납액 내역	8
(2) 미수납액 내역	8
다. 집행실적 분석	9
2. 세출	10
가. 총괄	10
나. 집행내역	12
(1) 전용액 등	12
(2) 불용액	13
다. 집행실적 분석	14

3. 재무제표 분석 15

가. 총괄 15

나. 재무제표 분석 17

Ⅲ. 검토의견 19

가. 병역판정검사(1131-301): 잠복결핵검사 낙찰단가를 고려한 단가 편성
필요 21

(1) 사업 개요 21

(2) 검토의견 22

나. 현역병모집(1232-303):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별 구비장비 편차 해소 필요 25

(1) 사업 개요 25

(2) 검토의견 26

다. 현역병입영(1232-305): 국외병역자원 적극적 관리를 위해 병무관 파견
추진 필요 30

(1) 사업 개요 30

(2) 검토의견 31

라. 사회복지무요원 교육(1434-319):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과정(새롭과정) 효과성
제고 필요 35

(1) 사업 개요 35

(2) 검토의견 36

마.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대체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시 필요	40
(1) 사업 개요	40
(2) 검토의견	41
바. 병무행정안내(7134-310):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금 법령근거 마련 필요	44
(1) 사업 개요	44
(2) 검토의견	45
사.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의무자 여비대상자 인원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48
(1) 사업 개요	48
(2) 검토의견	49
아. 병무행정운영(7134-317): 병역기피 명단공개자에 대한 삭제사유 발생시 적시 삭제조치 필요	52
(1) 사업 개요	52
(2) 검토의견	53
자. 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 사회복귀준비금 월 지원단가 추계 개선을 통한 불용 최소화 필요	56
(1) 사업 개요	56
(2) 검토의견	57
차. 시설관리(7136-441):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사업 추진업체 다양화 필요	60
(1) 사업 개요	60
(2) 검토의견	61

I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병무청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2억 5,600만원 보다 6억 6,200만원이 증가한 9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7억 1,200만원이 수납되고 2억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2억 600만원은 납기 미도래 관유물대여료 9,800만원, 국외 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 4,800만원, 퇴직수당 환수 기타경상이전수입 4,000만원, 징계부가금 2,100만원임.

[2025년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5년	256	918	712	-	206
2024년	336	551	444	-	107

나. 세출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4,731억 9,600만원으로, 이 중 4,610억 3,800만원(97.4%)을 집행하고

121억 5,800만원(2.6%)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5년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등	전용액 등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473,196	473,196	-	±2,676	473,196 (100%)	461,038 (97.4%)	-	12,158 (2.6%)

○ 세출예산현액 4,731억 9,600만원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전용액은 인건비 25억원,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6,600만원 및 건강보험부담금 5,900만원, 예산성과금 6백만원 등 26억 3,100만원이고, 사회복지무연수센터 공공요금 4,500만원은 내역 변경임.

불용액은 인건비 7억 2,500만원, 기본경비 4억 900만원, 사업비 110억 2,400만원 등 총 121억 5,800만원임.

II

주요내역

1. 세입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 (C/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E=B-C-D)	
					(D)	% (D/B)		% (E/B)
합 계	256	918	712	77.5	-	-	206	22.5
○ 토지대여료 (511)	2	2	2	100.0	-	-	-	-
○ 건물대여료 (512)	108	161	63	39.2	-	-	98	60.8
○ 기타관유물 대여료 (513)	29	25	25	100.0	-	-	-	-
○ 과태료 (563)	5	51	3	6.6	-	-	48	93.4
○ 징계부가금 (564)	-	23	2	10.1	-	-	21	89.9
○ 변상금 (571)	-	456	456	100.0	-	-	-	-
○ 위약금 (572)	2	0.01	0.01	100.0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596)	91	174	134	77.2	-	-	40	22.8
○ 기타잡수입 (691)	3	4	4	100.0	-	-	-	-
○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3)	16	22	22	100.0	-	-	-	-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수납액	수납액내역
계	712	
○ 토지대여료	2	○ 청사부지 일부 임대 수입
○ 건물대여료	63	○ 병역판정검사장 나라사랑카드발급소 임대 등
○ 기타관유물 대여료	25	○ 주거용 임차숙소 사용료 등
○ 과태료	3	○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징계부가금	2	○ 징계부가금
○ 변상금	456	○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금액
○ 위약금	0.01	○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 기타경상이전 수입	134	○ 정부구매카드 등 카드 적립금 등 ○ 과오납 환수,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 기타잡수입	4	○ 폐기문서 및 고철 등 매각대금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22	○ 노후 공용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 자료 : 병무청

(2)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미수납액	미수납액내역
계	206	
○ 건물대여료	98	○ 납기미도래(11건)
○ 과 태 료	48	○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2건)
○ 징계부가금	21	○ 징계부가금(2건)
○ 기타경상 이전수입	40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1건)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병무청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2억 5,6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9억 1,8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7.5%인 7억 1,200만원임.
-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주요 원인은 변상금 4억 5,6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발생 1억 2,100만원 등이 추가 징수 결정된 것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2.5%로 나타나고 있는바, 미수납액은 관유물대여료 납기미도래(11건) 9,800만원, 국외여행 미귀국자 보증인 체납 과태료(2건) 4,800만원, 징계부가금(2건) 2,1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 4,000만원임. 이 중 납기미도래는 '26년 1월 전액 수납 완료되었음.

2. 세출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 예산	예산변동		예산 현액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 년 이 월	전 용 등					
합 계	473,196	-	2,676 -2,676	473,196	461,038	97.4	-	12,158
<병무 행정(044)>	473,196	-	2,676 -2,676	473,196	461,038	97.4	-	12,158
□병역자원선발 (1100)	22,519	-	±6	22,519	21,408	95.1	-	1,111
병역판정검사 (1131-301)	22,519		±6	22,519	21,408	95.1	-	1,111
□병역자원충원 (1200)	3,874	-	-	3,874	3,829	98.8	-	45
현역병모집 (1232-303)	2,818			2,818	2,803	99.5	-	15
현역병입영 (1232-305)	378			378	372	98.3	-	6
병력동원소집관리 (1232-308)	678			678	655	96.5	-	23
□보충역복무지원 (1400)	6,653	-	±45	6,653	6,565	98.7	-	88
산업지원인력 (1434-309)	344			344	340	98.9	-	4
사회복무요원 교육 (1434-319)	4,174		+45	4,219	4,215	99.9	-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434-320)	1,201			1,201	1,158	96.4	-	43
대체역 편입 및 소집 (1434-323)	934		-45	889	851	95.8	-	38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 예산	예산변동		예산 현액	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 년 이 월	전 용 등					
□ 병무 행정 지원 (7100)	440,150	-	~~±265~~	440,150	429,236	97.5	-	10,914
인 건 비 (7111-100)	142,121	-	~~+2500~~ -125	144,496	143,771	99.5		725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7111-200)	3,594		+66	3,660	3,488	95.3		171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7111-250)	7,291			7,291	7,053	96.7		238
병무 행정 안내 (7134-310)	2,906			2,906	2,875	98.9		31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7134-313)	5,384		+59	5,443	5,402	99.2		41
병무 행정 운영 (7134-317)	8,440			8,440	7,418	87.9		1,022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7134-324)	4,762			4,762	4,644	97.5		118
병역의무자지원 (7135-314)	28,818			28,818	27,335	94.9		1,483
사회복무요원운용 (7135-315)	7,416			7,416	6,704	90.4		712
사회복무이행지원 (7135-326)	212,733		~~-2500~~	210,233	204,211	97.1		6,022
시설 관리 (7136-441)	3,452			3,452	3,236	93.8		216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137-325)	315			315	300	95.1		15
병무행정정보화(정보화) (7137-501)	12,918			12,918	12,799	99.1		119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전용액 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별	전용액 등	전 용 사 유
계	2,676	
○ 인건비	2,500	○ 인건비 부족
○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66	○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
○ 병무청 건강보험금	59	○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부담금 부족
○ 병역판정검사	6	○ 예산성과금
○ 사회복지요원 교육	45	○ 사회복지연수센터 공공요금 부족 (내역변경)

* 자료 : 병무청

(2) 불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별	예산현액	불용액	%	불용액 내역
계	473,196	12,158	2.6	집행잔액 12,158백만원
○ 병역판정검사	22,519	1,111	4.9	집행잔액 1,111백만원
○ 현역병모집	2,818	15	0.5	집행잔액 15백만원
○ 현역병입영	378	6	1.7	집행잔액 5백만원
○ 병력동원소집관리	678	23	3.5	집행잔액 23백만원
○ 산업지원인력	344	4	1.1	집행잔액 4백만원
○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4,219	4	0.1	집행잔액 4백만원
○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1,201	43	3.6	집행잔액 43백만원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889	38	4.2	집행잔액 38백만원
○ 인건비	144,496	725	0.5	집행잔액 725백만원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3,660	171	4.7	집행잔액 171백만원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7,291	238	3.3	집행잔액 238백만원
○ 병무행정안내	2,906	31	1.1	집행잔액 31백만원
○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5,443	41	0.8	집행잔액 41백만원
○ 병무행정운영	8,440	1,022	12.1	집행잔액 1,022백만원
○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4,762	118	2.5	집행잔액 118백만원
○ 병역의무자지원	28,818	1,483	5.1	집행잔액 1,483백만원
○ 사회복지무요원운용	7,416	712	9.6	집행잔액 712백만원
○ 사회복지무이행지원	210,233	6,022	2.9	집행잔액 6,022백만원
○ 시설관리	3,452	216	6.2	집행잔액 216백만원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15	15	4.9	집행잔액 15백만원
○ 병무행정정보화	12,918	119	0.9	집행잔액 119백만원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731억 9,600만원으로, 이 중 4,610억 3,800만원(97.4%)을 집행하였음.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용액 등은 26억 7,600만원, 불용액은 121억 5,800만원(2.6%)이 발생하였음.
-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액 등 26억 7,600만원의 내역은
 - 인건비 25억원
 -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 6,600만원
 -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부담금 부족 5,900만원
 - 예산성과금 600만원
 - 사회복지무연수센터 공공요금 내역변경 4,500만원임.
- 불용액 121억 5,800만원의 내역은
 - 병역자원 선발 11억 1,100만원
 - 병역자원 충원 4,500만원
 - 보충역 복무지원 8,800만원
 - 병무행정지원 109억 1,400만원임.

3. 재무제표 분석

- 병무청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구분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A-B)	
				금액	비율
재 정 상태표	자 산	386,625	380,298	6,327	1.7 %
	부 채	233,090	176,323	56,767	32.2 %
	순 자 산	153,535	203,975	△50,440	△24.7 %
재 정 운영표 (프로그램별)	프로그램순원가	30,719	29,658	1,061	3.6 %
	관리운영비	505,332	503,721	1,611	0.3 %
	비배분비용	36	-	36	-
	비배분수익	374	451	△77	△17.1 %
	재정운영순원가	535,713	532,929	2,784	0.5 %
	비교환수익 등	-	-	-	-
	재정운영결과	535,713	532,929	2,784	0.5 %
재 정 운영표 (성질별)	수익합계	374	451	△77	△17.1 %
	비용합계	536,087	533,379	2,708	0.5 %
	재정운영결과	535,713	532,929	2,784	0.5 %
순자산 변동표	기초순자산	203,975	323,520	△119,545	△37.0 %
	재정운영결과	535,713	532,929	2,784	0.5 %
	재원의조달및이전	485,259	413,540	71,719	17.3 %
	조정항목	13	△157	170	108.3 %
	기말순자산	153,535	203,975	△50,440	△24.7 %

구분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A-B)	
				금액	비율
현금 흐름표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230	-	15,23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59	-	△10,359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71	-	△4,871	-
	현금의증감	-	-	-	-
	기초의현금	-	-	-	-
	기말의현금	-	-	-	-

* 자료 : 병무청

나. 재무제표 분석

- 2025년 병무청 자산은 3,866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2,700만원(1.7%)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33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7억 6,700만원(32.2%)이 증가하였음.

자산의 증가는 유·무형자산이 6억 4,000만원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 10억 1,100만원, 기타자산 59억 5,5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부채의 증가는 차입부채가 41억 3,300만원 감소한 반면, 충당부채 608억 6,200만원, 기타부채 3,9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 2025년 재정운영결과는 5,357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400만원(0.5%) 증가하였음. 이는 프로그램순원가(307억 1,9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5,053억 3,200만원)와 비배분비용(3,600만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3억 7,400만원)과 비교환수익등(0원)을 차감한 값임.

병무청의 수익합계는 3억 7,400만원이고, 비용합계는 5,360억 8,700만원임.

- 2025년 기말순자산은 1,535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4억 4,000만원(24.7%) 감소하였음. 이는 기초순자산(2,039억 7,500만원)에서 당기 재정운영결과(5,357억 1,300만원)를 차감하고, 당기 재원의

조달 및 이전(4,852억 5,900만원)과 당기 조정항목(1,300만원)을
가산한 금액임.

- 2025년 현금흐름은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 152억 3,000
만원이 유입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억 5,900만원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억 7,100만원이 유출되었다.

III

검토의견

가. 병역판정검사(1131-301): 잠복결핵검사 낙찰단가를 고려한 단가
편성 필요

(1) 사업 개요

- 병역판정검사 사업(1131-301)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적기에 구입 등 필요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를 수행하는 한편, 병역면탈예방·단속 및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행위 차단, 확인신체검사 등 사전 병역면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25억 1,9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95.1%인 214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4.9%인 11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역판정검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잔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역판정검사	22,519	22,519	-	±681	22,519	21,408 (95.1%)	1,111 (4.9%)
- 병역판정검사	21,812	21,812	-	±687	21,812	20,707 (94.9%)	1,105 (5.1%)
- 병역면탈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707	707	-	±14	707	701 (99.2%)	6 (0.8%)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병역판정검사 내역사업 중 잠복결핵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잠복결핵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시 채혈 후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외부 검사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잠복결핵검사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35억 6,000만원 중 25억원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6,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잠복결핵검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잠복결핵검사	3,560	3,560	-	-	3,560	2,592 (72.8%)	968 (27.2%)

* 자료: 병무청

- 잠복결핵검사의 불용률이 27.2%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잠복결핵 위탁검사 건당 편성단가와 실제 계약단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됨.

[2025회계연도 잠복결핵검사 편성·집행 단가 현황]

편성단가	집행단가	차액
16,000원	11,358원	4,642원

* 자료: 병무청

○ 잠복결핵검사의 연도별 편성 및 계약 단가를 보면 2022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6,000원의 편성단가는 변동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반면, 계약단가는 매년 낮아져 2025년도에는 편성단가(16,000원)의 약 30% 수준의 차액(4,642원)이 발생하였음.

[2025회계연도 잠복결핵검사 결산현황]

(단위: 원)

구분	입찰 참가업체	계약업체	편성단가	계약단가	단가 차
2022	-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 의료법인 녹 십자의료재단	16,000	15,570	430
2023	- 대한결핵협회 - 의료법인 이원의 료재단 - 의료법인 삼광의 료재단	- 의료법인 이 원의료재단	16,000	14,500	1,500
2024	- 의료법인 삼광의 료재단 - 재단법인 서울의 과학연구소 - 사단법인 대한결 핵협회 - 의료법인 이원의 료재단 -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 의료법인 케이씨 엘의료재단	- 의료법인 삼 광의료재단	16,000	12,400	3,600
2025	- 의료법인 삼광의 료재단 - 사단법인 대한결 핵협회 -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 의료법인 삼 광의료재단	16,000	11,358	4,642

* 자료: 병무청

- 편성 및 집행 단가 간 유사한 수준이었던 2022년 이후 입찰 참가업체 수 증가 등 경쟁 여건 변화로 실제 집행단가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시 보다 현실적인 단가를 산정하였다면, 불용 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병무청은 외부 위탁검사 관련 예산 편성 시 최근의 실제 집행 단가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현역병모집(1232-303):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별 구비장비 편차
해소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모집 사업(1232-303)은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를 개인의 자격·전공·면허 등 적성과 연계하여 선발하고,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영 전, 복무 중, 전역 후를 아우르는 병역진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8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9.5%인 28억 300만원을 집행하여 0.5%인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현역병모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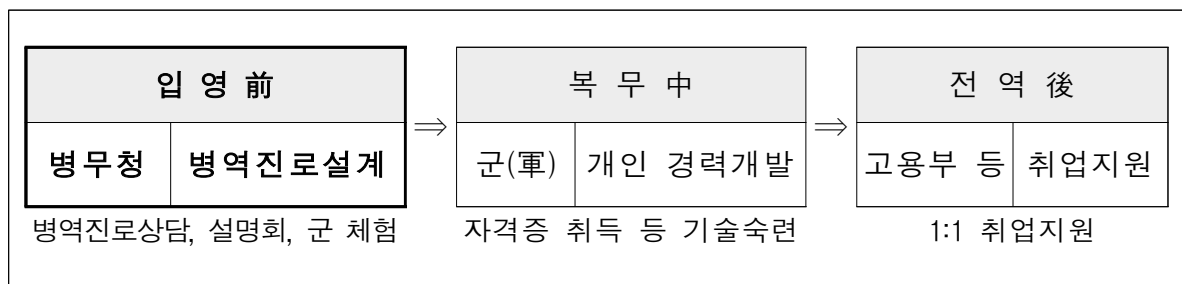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현역병모집	2,818	2,818	-	±58	2,818	2,803 (99.5%)	15 (0.5%)
- 현역병모집	544	544	-	+15 -100	459	452 (98.5%)	7 (1.5%)
- 병역진로설계	2,274	2,274	-	+129 -44	2,359	2,351 (99.7%)	8 (0.3%)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되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입영 전 직업선호도 검사¹⁾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관이 병역진로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의 전공·경력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군 복무시 추천받은 군 특기 분야에서 개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군 경력을 바탕으로 복학·취업 등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체계도]



* 자료: 병무청

- 동 사업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²⁾ 설치·운영과, 각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관할 내에 있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 방문하여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지원 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찾아

1)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직업선호도 검사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및 학문분야 등을 측정하여 흥미유형 6가지(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에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함. 병무청은 2019년도 정책연구용역(‘진로·적성-군 특기 연결방안 등’)을 실시하여,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와 자격 등을 고려한 군 특기 연계 방안을 도출해 이를 병역진로설계 상담 시 활용하고 있음.

2) <참고자료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로 구성됨.

-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수도권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총 11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 각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병역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센터 방문시 다양한 장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병역진로설계센터별 체험형 장비 구비 현황]

(단위: 대)

구 분		총 계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	수원	인천	울산	창원	의정부
총 계		122	10	11	12	11	12	17	9	11	10	9	10
전차시뮬레이터		6	1	1	1	1	1	1					
사격체험		12	1	1	1	1	1	1		2	1	2	1
이동형 사격 장비		19		1	2	1	3	3	1	1	3	2	2
VR 장비	블랙이글	2	1								1		
	드론조정	7	1	1	1	1		1	1		1		
	전술사격	1							1				
	차륜형자주곡사포	6	1	1	1	1	1	1					
	항공정비 (공군)	1							1				
	입체작전	9		1	1	1	1		1	1	1	1	1

	(해군)												
	상륙장갑차(해병)	3					1		1	1			
팝드론		8	1	1		1	1	1		1		1	1
군복체험 AR		1						1					
체력 측정기		15	1		1	1		5		3		1	3
군용침대, 관물대		10	1	1	1	1	1	1	1	1	1		1
군번줄 각인기		11	1	1	2	1	1	1	1		1	1	1
BMI 측정기		11	1	2	1	1	1	1	1	1	1	1	

* 자료: 병무청

- 그런데 각 센터별 체험형 장비의 구비현황을 보면, 센터별로 장비의 종류 및 장비수에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진로 선택시 다양한 군 복무 및 군 장비 체험의 기회를 갖는데 한계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전차시뮬레이터는 수원센터 등 5개의 센터에서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블랙이글 VR장비는 서울, 울산센터에 항공정비 VR 장비는 수원센터에만 구비되어 있으며, 상륙장갑차도 부산센터 등 3개의 센터에만 구비되어 병역의무자의 사전 체험기회에 제한이 발생함.
- 센터별로 징집·모집, 육군·해군·해병대·공군 등 어느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 부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센터에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진로 선택시 좀 더 다양하고 충분한 군 복무 및 군

장비 체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 센터의 체험형 구비장비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현역병입영(1232-305): 국외병역자원 적극적 관리를 위해 병무관
파견 추진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입영 사업(1232-305)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소요를 적정 충원하여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 지원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현역병입영),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를 확산(국외자원관리)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98.3%인 3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1.7%인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현역병입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잔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현역병입영 사업	378	378	-	±10	378	372 (98.3%)	6 (1.7%)
- 현역병입영	242	242	-	-	242	236 (97.5%)	6 (2.5%)
- 국외자원관리	136	136	-	±10	136	136 (100.0%)	- (0.0%)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국방개혁 2.0이 목표로 하는 상비 병력 50만명 규모³⁾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 가량의 신규 병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⁴⁾됨.

그러나, 국내 병역 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이는 추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외 병역 자원의 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20세 병역자원 규모 변동 예상 추이]

(단위: 만명)



* 자료: 병무청(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2025년 기준 현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 자원은 약 11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중 약 3만명은 학업 수행, 단기 해외여행 등을 사유로 하는 국외 일시체류자이고, 약 8만명은 영주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4) 국방중기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현역병은 상비병력 50만명의 60%(30만명) 수준이고, 현역병이 1.5년(18개월) 복무하므로 이를 감안 시 연간 약 20만명 충원 필요(병무청 설명)

권자, 복수 국적자 등으로 해외 거주 목적 국외 이주자임.

- 2025년 말 기준 국외 병역 자원 규모는 국내 총 병역 의무 미이행자 (입영·소집 대상자) 규모 약 65만 7,000명의 약 16.0% 수준으로 상당규모의 병역자원이 국외에 체류·거주하고 있음.

[연도별 국외 체류·거주 병역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국외일시체류자			국외이주자				
		소계	24세 이하	25세 이상	소계	24세 이하*	25세 이상		
							영주권 등	부모 동거	복수 국적
'25년	105,150	28,724	24,968	3,756	76,426	14,477	39,135	11,573	11,241
'24년	109,324	29,218	25,370	3,848	80,106	15,372	42,903	11,382	10,449
'23년	114,294	30,519	26,549	3,970	83,775	17,001	45,964	11,238	9,572
'22년	114,924	27,116	22,730	4,386	87,808	18,816	49,268	11,016	8,708

* 자료: 병무청

- 병무청은 2025회계연도에 국외 병역 자원 관리를 위하여 현역병입영 세무사업(1232-305) 내에 국외자원관리 내역사업을 두고 예산 1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병역 이행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 출국 시 병역 의무자에게 배부하는 안내문 제작 및 SNS 광고를 위한 일반수용비 (1억 1,900만원)가 대부분(전체 예산액의 87%)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유사한 사업 내역 및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국외자원관리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금액	114	107	116	112	136	136	136	136
예산 내역	<2022년~2025년 주요 예산 편성 비목 내역> -국외병역자원관리 및 병역이행 정보제공 등 수용비 -국외이주자 중 국내 장기 체류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 자료: 병무청

- 병무청은 국외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법무부, 재외동포청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재외국민 병역설명회, 재외공관 위임사무 실태조사 등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무부처가 아닌 점과 일시적인 출장이라는 점에서 국외 병역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실제로 국외 체류 병역 자원의 병역 의무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외 체류·거주 병역 자원 병역 의무 이행 현황]

(2025.12.31.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주권자 등 자진입영자	684	690	600	418	431	467

* 자료: 병무청

- 또한 국가별 국외병역자원 분포 현황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병역자

원의 상당 부분(64.3%)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국가의 병역자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직접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병무청은 병무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병무관은 정보접근이 어려운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제도를 적기에 안내하고 허가기간 내 귀국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국외병역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현지 한인학생회, 각종 청년단체 및 한인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병역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체계적 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교민 사회 내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자발적인 병역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내실있는 국외자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해 미국 및 일본에 대해서 병무관을 신설하여 파견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 국외병역자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브라질	기타
'22년	114,924	47,738	29,263	8,230	3,420	2,895	1,736	1,613	20,029
'23년	114,294	45,021	30,087	7,562	3,466	2,840	1,725	1,541	22,052
'24년	109,324	42,158	28,613	7,190	3,304	2,653	1,674	1,500	22,232
'25년	105,150	39,154	28,431	7,159	3,266	2,563	1,726	1,444	2,1407

* 자료: 병무청

라. 사회복지요원 교육(1434-319): 사회복지요원 교육 과정(새롭과정)
효과성 제고 필요

(1) 사업 개요

- 사회복지요원 교육(1434-319) 사업은 사회복지요원을 대상으로 복무 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사회복지연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42억 1,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9.9%인 42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0.1%인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사회복지요원 교육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사회복지요원 교육	4,174	4,174	-	+82 -37	4,219	4,215 (99.9%)	4 (0.1%)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및 기본 소양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5월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병역법」 제33조의2⁵⁾에 마련됨.

또한, 사회복지요원의 통일적·지속적인 교육 여건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회복지요원 통합 교육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설치하여 전체 사회복지요원 기본교육 및 각종 복무지도교육⁶⁾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요원 교육은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사명감 고취를 목적으로하는 복무기본교육(기본과정, 디딤과정)과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복무지도교육(나래과정, 새롭과정, 이음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7,546명의 교육이수 실적을 나타냄.

5)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6)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도별 사회복지요원 교육 이수실적]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9,861	30,733	28,773	27,546
복무기본교육	28,919	29,775	27,738	25,982
복무지도교육	942	958	1,035	1,564

* 자료: 병무청

- 이 중 새롭과정은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4박 5일간 32.5시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과정임.

[사회복지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구분	과정명	기간	교육대상
복무기본교육	기본	4박5일	모든 사회복지요원
	디딤	2박3일	사회복지요원 대표,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미래설계·진로탐색 교육 희망자
복무지도교육	나래	2박3일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새롭	4박5일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복무지도교육 대상자 중 필요한 자
	이음	2박3일	현역복무부적합자 중 군 복무 적응 곤란자 중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

* 자료: 병무청

- 새롭과정의 교육목표는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복무분야에 부적응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것이나, 교육 수료 후에도 복무규정위반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율이 매년 40% 전후로 유지되고 있음.

[새롭교육 수료 후 복무규정위반 인원 등 현황]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새롭교육 수료인원		378	425	399	362
수료 후	복무규정위반 인원	115	130	118	114
	벌금이상 형 선고	30	45	68	12
계		145	175	186	126
비율(%)		38.3	41.1	46.6	34.8

* 자료: 병무청

- 교육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상 단기간의 교육을 통한 개입만으로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교육 수료 후에도 매년 40% 수준으로 복무규정위반 등의 인원이 나오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 사업을 통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교육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의 내실화, 행동변화 교육에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의 선정, 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의 개선,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지연수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요원
새롭과정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대체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시 필요

(1) 사업 개요

-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사업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9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7%인 8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4.3%인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대체역 편입 및 소집	934	934	-	-45	889	851 (95.7%)	38 (4.3%)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1434-323)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헌법재판소가 (舊)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⁷⁾ (2018. 6. 28.)을 함에 따라 대체복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20년 1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0. 1. 1. 시행)됨.
- 대체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 하기 시작(2020.6.30.)한 이후로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1,040명이 대체역으로 복무를 완료하였고 1,640명이 소집되어 복무 중임.⁸⁾

[법무부 교정시설 별 대체역 복무 인원 현황]

(’25. 12. 31. 기준, 단위: 명)

계	서울	인천	서울 남부 구	화성 직훈	의정 부	여주	서울 남부 교	춘천	원주	영월	경북 제1	부산	포항	진주	대구	안동
1,640	95	60	78	70	42	73	66	39	48	46	36	42	44	47	42	48

7)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법」 제5조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시함.(2011헌바379, 2018.6.28.)

8) <대체역 소집해제자(복무만료) 현황>

(’25.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인 원(명)	-	1	2	105	531	401	1,040

	경북 제2	김천 소년	울산	통영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충주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교육 센터
	36	40	35	31	91	48	81	45	40	72	39	64	53	57	32	0

* 자료: 병무청

-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소집 후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합숙근무 형태로 교정시설 관리, 교정·교화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36개월임.
- 병역의 종류는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구분되고, 이 중 보충역은 대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휴학 중인 대학생은 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지게 됨.
- 그런데 현재 대학을 휴학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원격강좌 수강 시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강료·수수료를 지원하여 학업 공백 최소화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동 지원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원격강좌 수강료 등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원격강좌 지원	2025년도 집행액
현역	수수료(2017년~현재), 수강료(2019년~현재)	4,452
사회복무요원	수수료(2020년~현재), 수강료(2021년~현재)	515
대체복무요원	미지원	-

* 자료: 병무청

- 대체복무요원 역시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 기회 지원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⁹⁾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9) 원격강좌 수강 시스템 운영: 국방부, 예산 편성·집행: 법무부

바. 병무행정안내(7134-310):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금 법령근거 마련 필요

(1) 사업 개요

○ 병무행정안내(7134-310) 사업은 전반적인 병무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병무행정안내 사업, 병무행정 홍보 사업, 병역 자궁심고취 사업, 국민참여 현장소통 사업 및 병무행정 주요정책 홍보 사업으로 구성됨.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9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8.9%인 28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1.1%인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병무행정안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무행정안내	2,906	2,906	-	-	2,906	2,875 (98.9%)	31 (1.1%)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병역 자긍심 고취 사업’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사람,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병역법」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10)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동 사업으로 포상금(310-03)을 지급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병역명문가 포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 병역명문가 포상	54	54

* 자료: 병무청

- 한편,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현장소통’ 사업에서도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 후 공모전 수상작 35편에 대해서 1,900만원을 포상금(310-03)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음.

- 10)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o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	19	19

* 자료: 병무청

<병역이야기 세부집행 내역>

- 2025년 병역이야기 공모전 수상 현황(총 35편, 상금 19백만원)
 - 내역: 대상 2편(각 300만원, 국방부장관상), 최우수 4편(각 120만원, 병무청장상), 우수상 8편(각 50만원, 병무청장상), 장려상 21편(각 20만원, 병무청장상)
- 공모전 경과: ('19년) 공정병역 UCC 공모전→('21년)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22년~) 병역이야기 공모전<영상·웹툰>

- 병역명문가 및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은 모두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병역법」에 근거를 둔 병역명문가 포상과 달리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반되는 집행임.
- 매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예산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배포하여 각 부처에서 예산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집행지침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통지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포상금은 현금성 경비로서 사업홍보, 참여율 제고 등의 사업효과가 상당함에도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지침에서 법령에 지급 근거 및 한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법령 근거없이 포상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또한 유사 사업인 병역명문가 포상 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따른 다른 기준(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이야기 공모전 사업으로 지급하려는 포상금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의무자 여비대상자 인원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개요

-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7135-314)은 병역의무자가 징·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보상·치료비를 지급하고, 사회복지요원 수송차량 임차료 및 사회복지교육생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88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4.1%인 273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5.9%인 14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 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역의무자지원	28,818	28,818	-	-	28,818	27,335 (94.1%)	1,483 (5.9%)
- 병역의무자지원	25,403	25,403	-	-	25,403	24,154 (95.1%)	1,483 (5.8%)
- 사회복지요원지원	3,415	3,415	-	-	3,415	3,181 (93.1%)	234 (6.9%)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중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 사업은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등을 위해 이동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병역법」 제79조¹¹⁾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임.
- 2025회계연도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예산은 238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226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7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규모가 적지 않은데, 10억원 이상의 불용규모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2023~2025) 예결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		예산집행		불용액	%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5년	1,059,688	23,816	946,331	22,669	1,147	4.8
2024년	989,092	23,045	921,775	21,955	1,090	4.7
2023년	1,058,206	24,280	997,341	23,269	1,011	4.2

* 자료: 병무청

11)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 주요 불용 발생원인은 의무자 대상의 편성인원과 실제 집행인원 간의 차이에 발생하고 있는데, 2023~2024년도에는 그 차이가 6만명대 수준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11만명이 넘는 차이가 발생했던 것에 기인함.

[연도별(2023~2025년) 예결산 현황]

(단위: 명, %)

구분	예산편성	예산집행	차이	차이발생인원 비율
	인원	인원		
2025년	1,059,688	946,331	113,357	10.7
2024년	989,092	921,775	67,317	6.8
2023년	1,058,206	997,341	60,865	5.8

* 자료: 병무청

-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법」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로서 미지급 또는 지연시 병역의무자의 권익 침해 또는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과 예산편성과 군 소요 확정 및 집행 시점 간의 차이로 정확한 소요를 사전에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여유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편성인원과 집행인원 간의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이전보다 2배 가량 늘어 악화되고 있는 점과 매년 10억원을 상회하는 불용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 병무행정운영(7134-317): 병역기피 명단공개자에 대한 삭제사유 발생시
적시 삭제 조치 필요

(1) 사업 개요

- 병무행정운영 사업(7134-317)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등과 같은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8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87.9%인 74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12.1%인 10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무행정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병무행정운영	8,440	-	±8	8,440	7,418 (87.9%)	1,022 (12.1%)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병역법」 제81조의2제1항¹²⁾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병무청은 매년 12월 중순 경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현황]

(’26. 1. 31. 현재, 단위: 명)

공개일	최초 공개자						공개삭제 (의무이행 등)	현재 공개 중
	계	현역 입영	사회 복무	대체 복무	판정 검사	국외 체류		
’25.12.18.	343	111	31	4	10	187	10	333
’24.12.19.	422	147	41	1	31	202	124	298
’23.12.14.	355	109	46	2	23	175	155	200
’22.12.15.	281	80	29		32	140	142	139
’21.12.16.	342	92	30		30	190	176	166
’20.12.17.	256	118	26		25	87	184	72

* 자료: 병무청

12) 「병역법」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제5항¹³⁾에서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의 공개자에 대한 삭제 절차를 보면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병무청장 및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보고받은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 사유 발생한 날부터 최대 8일 이내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함.
- 2025년도에는 삭제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총 250건의 명단 삭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총 113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8일을 초과하여 삭제된 건수가 59건에 달하고 있음.
- 더욱이 삭제 사유발생일로부터 한달을 초과하여 실제 명단 삭제가

13)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루어진 경우도 25건에 달하고, 3개월을 초과한 건수도 7건에 달하는 등 명단 삭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

[2025년도 병역의무 기피 공개자 명단 삭제 현황]

(단위: 건)

명단 삭제 건수	삭제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초과 보고	삭제사유 발생일로부터 8일 초과 삭제	삭제사유 발생 일부터 한달 초과 삭제	삭제사유 발생 일부터 3개월 초과 삭제
250	113	59	25	7

* 자료: 병무청

-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명단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공개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명단 삭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기피 명단공개자에 대한 삭제사유 발생시 삭제 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 사회복지이행지원(7135-326): 사회복지준비금 월 지원
단가 추계 개선을 통한 불용 최소화 필요

(1) 사업 개요

- 사회복지이행지원(7135-326) 사업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해지한 사회복지요원 대상으로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사회복지요원 사회복지준비금)하며,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원격강좌 수강료 및 사회복지요원 국외영주권자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025년도 예산액 2,127억 3,300만원 중 25억원을 전용한 예산현액 2,102억 3,300만원에서 97.1%인 2,042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복지이행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사회복지이행 지원	212,733	212,733	-	-2,500	210,233	204,211 (97.1%)	6,022 (2.9%)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병역법」 제79조의2¹⁴⁾에 따라 국가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 장병내일준비적금¹⁵⁾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 납입 원리금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2년 1월 적금 입금액부터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원리금의 33%, 2023년도는 원리금의 71%로 지원하다가 2024년도부터 원금의 100%를 지원해 오고 있음.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 비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 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원금의) 100%	(원금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자료: 병무청

- 14)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기간(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대표 정책 금융상품

- 2025회계연도 사회복지준비금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2,064억 6,500만원 중 1,969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95.4%의 집행률을 나타내어 이전보다는 집행률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음.

[연도별(2022~2025)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30,301	86,557	159,740	206,465
집행액	11,673	66,161	142,248	196,963
집행률	38.5	76.4	89.1	95.4

* 자료: 병무청

- 그러나 여전히 당초 예산액 대비 95억 가량의 불용액¹⁶⁾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병무청 세출예산의 총 불용액인 121억원의 78.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임.
- 2025회계연도의 주요 불용 발생원인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회복지무요원의 월 납입금액을 409,654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시의 월 지원단가는 377,088원으로 월 납입금액의 추정치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에 기인함.

16) 불용액 95억원은 사회복지준비금 사업의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에서 나온 수치로, 이 중 25억원의 전용 및 타 내역사업(사회복지무요원 건강보험료 등) 충당금액 약 10억원을 빼면 실제 사회복지무요원이행지원(7135-326) 사업의 불용액은 60억 2,200만원임.

[2025년도 사회복지준비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월)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금액	206,465	196,963	9,502 * 집행률: 95.4%
소집해제 (예산)인원	27,317	27,317	
가입률 (지원인원)	90% (24,585)	98.1% (26,786)	
가입기간	20.5	19.5	
월 지원단가	409,654원	377,088원	

* 자료: 병무청

- 사회복지무요원의 개인별 특성상 사회복지준비금 가입여부,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의 한계는 분명 있어 보이나, 상당한 규모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지준비금 사업의 과다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월 지원단가 등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납입금액 증가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차. 시설관리(7136-441):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사업 추진업체
다양화 필요

(1) 사업 개요

- 시설관리 사업(7136-441)은 비연고지 근무자의 숙소 임차료 및 인천 국제공항 병무민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며, 소속기관의 노후시설 보수·유지관리로 붕괴 등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려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34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3.8%인 32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6.2%인 2억 1,600만원을 불용 하였음.

[시설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시설관리	3,452	3,452		±20	3,452	3,236 (93.8%)	216 (6.2%)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은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일반용역비 (210-14)로 집행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에는 11개청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액 1억 5,200만원 중 1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은 불용하였음.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예산액	지출액	비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152	141	11개 청×12.8

* 자료: 병무청

- 동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¹⁷⁾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¹⁸⁾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병무청은 현재 서울청 등 11개 청에 대해 본관동, 병무연수원, 검사동 등 28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안전점검 시설물 현황]

연번	시설명		2022년 (23개동)	2023년 (24개동)	2024년 (26개동)	2025년 (28개동)
1	서울청	본관동	○	○	○	○
2		병무회관	○	○	○	○
3		군지원센터	○	○	○	○
4		병무연수원	○	○	○	○
5	부산울산청	본관동	○	○	○	○
6		검사동	○	○	○	○
7		현역입영센터	-	-	추가	○
8	경인청	본관동	○	○	○	○
9		검사동	○	○	○	○
10		군지원센터	○	○	○	○
11	광주전남청	본관동	○	○	○	○
12		검사동	○	○	○	○
13		민원동	○	○	○	○
14	대전충남청	본관동	○	○	○	○
15		검사동	○	○	○	○
16		직원숙소	○	○	○	○
17	강원청	본관동	○	○	○	○
18		검사동	○	○	○	○
19	충북청	검사동	○	○	○	○
20		본관동	-	-	-	추가
21	전북청	본관동	○	○	○	○
22		검사동	-	추가	○	○
23	경남청	본관동	○	○	○	○
24		별관동	-	-	추가	○
25	경기북부청	본관동	○	○	○	○
26		검사동	○	○	○	○
27	강원영동청	본관동	○	○	○	○
28		모병동	-	-	-	추가

* 자료: 병무청

- 병무청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매년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통해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별 집행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1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각 지방청에서 위탁한 연도별 용역업체 현황을 보면 경인청, 광주전남청, 강원영동청, 대전충남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청은 모두 매년 동일한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음.

[안전점검 시설물 현황]

연 번	소속 기관	용역업체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서울청	한국안전기술 정보	한국안전기술 정보	한국안전기술 정보	한국안전기술 정보
2	부산 울산청	(주)디에스구조 엔지니어링	(주)디에스구조 엔지니어링	(주)디에스구조 엔지니어링	(주)디에스구조 엔지니어링
3	경인청	(주)이원구조 엔지니어링	(주)남북안전 진단	(주)이원구조 엔지니어링	(주)이원구조 엔지니어링
4	광주 전남청	(주)케이제이구 조기술사 사무소	지오구조 안전진단(주)	지오구조 안전진단(주)	(주)무진구조 안전

-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
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대전 충남청	(주)케이에스 건설	(주)데미샘	(주)데미샘	(주)데미샘
6	강원청	(주)나라구조	(주)나라구조	(주)나라구조	(주)나라구조
7	충북청	(주)청우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청우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청우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청우종합 건축사사무소
8	전북청	(유)금강종합 건설	(유)금강종합 건설	(유)금강종합 건설	(유)금강종합 건설
9	경남청	(주)성신구조 ENG	(주)성신구조 ENG	(주)성신구조 ENG	(주)성신구조 ENG
10	경기 북부청	(주)이든구조 기술사사무소	(주)이든구조 기술사사무소	(주)이든구조 기술사사무소	(주)이든구조 기술사사무소
11	강원 영동청	토담하이텍	유원구조진단 건축사사무소	건흥 엔지니어링(주)	삼일안전 기술원(주)

* 자료: 병무청

- 동일 업체와의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외부에서 볼 때, 특혜 제공이나 유착 의혹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쟁 절차 부재로 인해 가격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품질 개선 유인도 약화될 수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향후 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시 용역업체를 추가로 발굴하여 가격경쟁력, 안전점검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용역업체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